



제433회국회(임시회)
제1차보건복지위원회
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 고독사위험자 정기적 안부 확인 〉

■ 차지호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16021호)

2026. 3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전문위원 신은호

목 차

I . 개요	1
II . 주요 내용별 검토	2
1. 고독사위험자 정기적 안부 확인	2

I. 개요

1. 차지호의원 대표발의안(의안번호 제16021호)

가. 제안경위

(1) 제 안 자 : 차지호의원 등 14인

(2) 제 안 일 : 2026. 1. 14.

(3) 회 부 일 : 2026. 1. 15.

나. 제안이유

현행법은 고독사위험자의 조기발견과 상담·치료를 위한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, 그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지방자치단체별 안부확인 서비스의 시행 여부와 횟수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.

이로 인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발굴된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관리의 지속성이 확보되지 못하고, 고독사 예방체계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고독사위험자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관리서비스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고독사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제2항).

Ⅱ. 주요 내용별 검토

1. 고독사위험자 정기적 안부 확인

가. 개정안의 내용

-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로서 하여금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,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제2항).

현행	개정안
제13조(고독사위험자 지원대책) ① (생략) ②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,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<u>필요한</u> 조치를 하여야 한다. ③ (생략)	제13조(고독사위험자 지원대책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월 1회 <u>이상 정기적으로 고독사위험자의 안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</u>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

나. 검토의견

- 현행법 제4조¹⁾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면서, 고독사 현황 파악,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포괄적으로 마련할 책무를 부과하고 있음.

또한, 같은 법 제13조제2항²⁾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.

- 2024년 7월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‘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’을 실시하고 있으며,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안부 확인, 생활개선 지원,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, 사후관리 등이 있음.

이 중 안부 확인과 관련하여서는,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또는 자체 계획에 따라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안부 확인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방식과 주기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실정임.

- 개정안은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‘필요한 조치’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안부 확인 의무를 구체화하고, 고독사위험자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

1)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,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2)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제13조(고독사위험자 지원대책) ②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,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안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함으로써, 고독사 예방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.

- 다만, 고독사위험자의 안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은 개인의 생활 패턴, 거주 상태, 통신 및 이용 정보 등 사적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, 대상자의 수용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할 필요가 있음.
- 또한, 고독사위험자의 위험도에 따라 안부 확인의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·재정적 여건에 따라 안부 확인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, 대상 선정 기준, 우선순위, 안부 확인 방법 및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
다.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

- (보건복지부) 고독사 위험자의 고독·고립 예방을 위해 주기적 안부확인을 통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나, 사업 대상자의 고립 정도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의 유형이 다르며, 모든 대상자에게 안부 확인 서비스가 필요한 것은 아님.

또한, 월 1회라는 기준의 설정 근거가 모호하여 안부 확인 서비스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주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, 지자체의 탄력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 수행 시 재량적 판단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.

- (광주광역시) 사업대상자 동의 없는 강제적 안부확인 은 인권 침해 등으로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며, 안부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인적 안전망(지역사회보장협의체, 명예사회복지공무원, 이웃주민 등)과 업무담당자의 부담 증가가 예상되어 신중검토가 필요함.

- (경기도) 이미 연간 6차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 보충 없이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안부 확인을 의무화할 경우, 동일 대상에 대한 중복 조사가 이루어져 행정력 낭비 및 현장 혼선이 예상되며 형식적 확인으로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검토가 필요함.

문 의 처
02)6788-5497